

2025년 「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자활기업의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「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」의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 하오니, 관심 있는 자활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7.

(재)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: 2025년 「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」
- 추진 목적
 - 자활기업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지원
 - 시도별 자활기업 지원 편차 완화를 통한 균형 발전
- 공모 기간: 2025.7.23(월) ~ 8.4(월) 18시까지
- 지원 규모: 20개 자활기업에 전문인력 월 인건비 269만원 지원
 - ※ 1개 기업 당 1인 (총 20명)
 - ※ 2025년 최저임금 기준, 2024년 대비 1.7% 인상
 - ※ 지원금은 세전 기본급+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에 한하며, 퇴직금을 포함한 기타 수당 및 산재보험료는 기업 자부담임
 - ※ 최초 지원 기간은 1년이며, 이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4년의 추가 지원 가능(총 5년)
- 추진 주체별 역할

한국자활복지개발원	광역자활센터	자활기업
- 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- 광역 단위 예산 교부 - 광역별 지원 개소 수 조정 -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	- 공모 신청·접수 - 선정심사 및 지원 - 참여 자활기업 관리 -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협조 등	- 공모 신청 - 예산 교부 신청 및 예산 집행 - 전문인력 관리 -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협조 등

2

사업 운영 프로세스

일정	시작일	종료일	추진 주체	비고
사업 공모	2025.07.23.	2025.08.04.	(공모) 개발원 (신청) 기업 → 광역	광역별 담당자 전자메일로 접수
↓				
선정심사	2025.08.04.	2025.08.13.	광역·개발원	광역 ▶ 지역기업 개발원 ▶ 전국·광역기업
↓				
협약 체결	2025.08.21.	2025.08.28.	광역 ↔ 기업	
↓				
채용 승인 요청 및 채용 승인	2025.09.01.	2026.08.31.	(요청) 기업 → 광역 (승인) 광역 → 기업	전문인력 채용이 지연되더라도 지원 기간은 변경 불가함
↓				
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지원	2025.10.01.	2026.09.30.	(운영) 기업 (지원) 광역 → 기업 (모니터링) 개발원	
↓				
전문인력 변경 요청 및 승인	2025.09.01.	2026.08.31.	(요청) 기업 → 광역 (승인) 광역 → 기업	
↓				
연장지원 심사 및 선정	2026.07.02.	2026.07.28.	광역	심사 종료 5일 이내에 개발원으로 결과 보고
↓				
기업 단위 만족도 조사	2026.12.01.	2026.12.19.	기업 → 광역	
↓				
기업 및 광역 단위 정산	2025.12.01.	2025.12.19.	광역 → 개발원	

※ 세부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접수 기간: 2025.7.23(수) ~ 8.4(월) 18시까지

※ 마감 시간을 넘겨서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

□ 신청 방법

○ 광역자활센터별 담당자 전자메일을 통한 수기 접수

* 세종 소재의 자활기업은 충남 광역자활센터로 신청

* 광역자활기업은 주요 사무처 주소지 기준 광역자활센터로 신청

* 전국 자활기업은 한국자활복지 개발원으로 직접 신청

* 신청 접수 누락 및 실수에 대해서 추가 제출 등 예외 상황을 적용하지 않으므로, 기업은 제출 전후로 접수 전에 대하여 확인 할 것

○ 신청 시 메일 제목은 ‘전문인력 지원사업 공모 신청(기업명)’ 으로 하고, 기업 직인을 날인한 공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○ 최초 제출 이후, 서류에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 마감 전까지 추가 제출이 가능하며, 마감 후 필수서류 미비로 확인된 경우,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

□ 대상 자격

구분	자격요건
지역자활기업	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-법인격이 있는 자활기업 -대표자를 포함한 유급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자활기업 -공고 마감일 기준으로, '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'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활기업
광역자활기업*	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-법인격이 있는 자활기업 -대표자를 제외한 유급근로자가 1인 이상인 자활기업 -전년도 매출 발생 및 주 사무처(사업장)를 보유한 자활기업 -공고 마감일 기준으로, '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'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활기업
전국자활기업	-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, 제출한 '전문인력 활용계획서'의 타당성에 따라 선정 여부를 판단함

*광역자활기업과 해당 기업의 회원사는 별도 기업 인정.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
 이에 따라 광역 자격요건 중 전년도 매출의 경우 회원사의 매출 인정하지 않음
 **사업단에서 법인으로 신규 출범한 경우에는 사업단 매출 인정

□ 신청 제한 기업

- 공고 마감일 기준, 「지자체 자활기금 전문인력 지원사업」으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
- 임금 체불 또는 4대보험료의 체납이 있거나, 근로계약서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기업
- 공고 마감일 기준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‘제18조의3(보고 등)’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
- 기타 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□ 제출서류

구분	서류명	비고
(필수/자체)	0. 신청 공문(기업 직인 날인 필수)	
(필수/공통)	1. [공통1] 제출서류 체크리스트	
(필수/개별)	2. [전문1] 접수 대장	
(필수/개별)	3. [전문2] 사업신청서	
(필수/개별)	4. [전문3] 전문인력 활용계획서	
(필수/개별)	5. [전문4] 타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현황	
(필수/자체)	6.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	
(선택/자체)	7. 취약계층 증빙서류	심사 가점 항목
(필수/자체)	8. 사업자등록증명원	
(필수/자체)	9.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	
(필수/자체)	10. 4대보험 완납증명서	
(필수/자체)	11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
(필수/자체)	12.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	유효기간 확인
(필수/자체)	13. 전년도 표준재무제표	
(필수/공통)	14. [공통5] 청렴이행각서	
(선택/자체)	15. 사전 진단 컨설팅 관련 증빙서류	심사 가점 항목

※ 개인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모두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및 보관

※ 6. 서류는 공고일 기준, 2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

※ 7.~11. 서류는 공고일 기준,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

※ 표준(추정)재무제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 불가능한 경우 광역 담당자와 대체 서류 협의토록 함

□ 광역자활센터 → 한국자활복지개발원

-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주사무처 소재지 광역자활센터로 신청 후 센터는 5일 이내로 신청 시 제출한 서류들을 개발원에게 접수해야 함 (~ 8.12일까지)

□ 추진 기간: 2025.8.5(화) ~ 8.13(수)

※ 기간 내에 광역센터별·개발원에서 진행

□ 추진 목적

- 1차 적격심사: 필수서류 및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

□ 추진 주체

-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기업 대상 심사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대상 심사
- ※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제시된 별도의 자격요건 충족 후, 개발원에서 심사 및 최종 선정함
- ※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기본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심사에 부치며, 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선정함

□ 1차 적격심사

- 필수서류 및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
- 미충족 기업은 서류심사 대상에서 최종 제외하며, 서류보완 기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

○ (지역자활기업 평가지표)

항목	심사내용	비고
필수서류 누락 여부	-필수서류 누락 여부	한 가지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될 경우, 1차 심사 탈락 처리
기본요건 충족 여부	-법인격 -대표자 포함 유급 근로자 5인 이상 -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'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'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	

○ (광역자활기업 평가지표)

항목	심사내용	비고
필수서류 누락 여부	-필수서류 누락 여부	한 가지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될 경우, 1차 심사 탈락 처리
기본요건 충족 여부	-법인격 -대표자 제외 유급근로자 1인 이상 -전년도 매출 발생 -주 사무처(사업장) 보유 -공고 마감일 기준,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'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' 제출 기업	

□ (전문인력 인정 범위)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자

- ① 기획, 인사·노무, 영업, 마케팅·홍보, 교육·훈련, 회계·재무,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- 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상 기술사,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
- ③ 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
- ④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
- ⑤ 자활사업 또는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

□ (채용 제한 전문인력)

- ① 채용일 기준 직전 12개월 이내에 해당 자활기업과 고용관계를 체결 또는 유지한 이력이 있는 자
*채용일은 협약 체결 이후로 하며, 그보다 앞서 채용된 자는 기존 인력으로 보아 지원하지 않음
- ② 기업 대표자 및 등기이사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
- ③ 기업 대표자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
- ④ 기업 등기임원 및 회원(주주, 조합원 등)
- ⑤ 외국인(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으로 F-2 / F-5 / F-6 비자인 자는 가능)
- ⑥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
- ⑦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□ (전문인력 경력증명 인정 서류)

- ① 해당 분야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(종전 근무지 휴·폐업 등으로 발급 불가할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서 ‘직종 포함’ 발급으로 대체하되, 직무 코드가 채용 분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, 경력 인정 불가)
- ②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(폐업 이력을 통해서 확인, 현재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함)
-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‘자활사업 또는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’에 한함)
- ④ 그밖에 경력 관련 서류의 경우 개발원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접수

-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기업에 있음
-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, 신청기간 내 공고된 방법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접수기한 미준수 등 귀책 사유가 신청기업에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,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
- 개발원 혹은 광역자활센터는 필요시 신청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최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비공개 처리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혹은 선정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된 기업은 즉시 사업 약정을 취소함
- 제출된 활용계획서 내용은 관할 광역자활센터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변경 시 사전 승인을 진행해야 함